

요식업경영관리판법(시행)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령 2014년 제4호

《요식업경영관리판법(시행)》은 상무부 부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는바, 발전개혁위의 동의를 거쳐, 현재 공포하고,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고포성

주임 서소사

2014년 9월 22일

제1조 요식 서비스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요식 업종의 건강하고 질서정연한 발전을 인도 및 촉진시키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본 판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요식 경영활동에 본 판법을 적용한다.

본 판법에서 말하는 요식경영활동은 즉시 가공 제작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업판매와 서비스성 노동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과 소비장소 및 시설의 경영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 요식업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업종계획, 정책 및 표준을 제정하며, 업종통계를 전개하고, 업종질서를 규범화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요식업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요식경영자가 특색 있는 요식업, 패스트푸드, 조식, 급식, 배달음식 등 요식의 대중화를 발전시키고, 표준화된 요리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자율적인 맛 조절을 편리하게 하며, 세트 메뉴 선택을 발전시키며, 적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5조 요식업종협회는 관련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업종자율, 인도, 서비스작용을 발휘하고, 요식업종 표준의 보급 실시를 발전시켜야 하며,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자원절약과 종합적 업무 이용을 지도한다.

요식업종협회는 업종의 공약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식경영자의 자원절약, 낭비반대를 이끌어야 한다.

제6조 요식경영자는 엄격히 법률, 법규와 규장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각종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며, 적극적으로 국가 및 업종 관련 경영관리, 상품, 서비스 등 방면의 표준을 관철시켜야 한다.

제7조 요식경영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자원절약 및 종합적 업무이용을 완성해야 한다.

요식경영자는 검소한 소비를 일깨우는 도움말 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절약표지를 붙여야 하며, 식사절약 및 예의 바른 식사 기준을 관철시켜야 한다.

제8조 요식경영자는 소비자가 식사 전 적당량 주문과, 식사 후 자발적 포장을 이끌어야 하고, 식사를 절약하는 소비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9조 요식경영자는 국가상품질량(质量, 품질) 및 식품안전강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요식경영자는 식당폐기물을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규정에 따라 조건을 구비한 기업이 자원화 이용을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요식경영자의 판매하는 식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의 표준가격은 국무원가격주관부문이 제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요식경영자의 최저소비 설치를 금지한다.

제13조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경영자는 상응하는 서비스 절차를 건립 및 완비해야 하고, 배달서비스의 시간, 배달범위 및 비용수취 기준을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문서와 식품안전의 요구에 따라, 합당한 교통수단, 설비를 선택하고, 시간, 품질, 수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상응하는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요식경영자가 판촉활동을 펼치는 경우, 판촉 원인, 판촉 방식, 판촉 규칙, 판촉 기한, 판촉 상품의 범위를 포함하는 판촉내용 및 관련 제한성 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요식경영자는 판촉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원재료 비축 및 서비스 준비업무를 완성해야 하고, 약속에 따라 관련의무를 이행한다.

판촉활동기간에 요식경영자는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상품질량 또는 서비스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제15조 요식경영자는 고객고발제도를 건립 및 완비해야 하고, 구체적 부문 또는 소비자고발을 수리, 처리하는 구체적인 부문과 인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발의 수리, 전달 및 처리 결과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요식경영자는 긴급사건 응급대비책, 응대체제를 건립 및 완비해야 하고, 직책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을 구체화 해야 한다.

제17조 현금 이상 지방 상무주관부문은 경영자 및 그 책임자, 고층관리인원의 신용기록을 수립 또는 관련기구에 위탁하여 수립해야 하며, 그것을 국가의 통일된 신용정보

플랫폼에 포함시키고, 법에 의거해 엄중한 위법행위 및 신용을 잃는 행위를 사회에 공개한다. 요식경영자 및 그 책임자, 고층관리인원은 상무주관부분의 요구에 따라 요식경영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주관부분은 요식경영자가 본 판법의 행위 위반 및 행정처벌 상황을 종합하고, 불량기록당안(档案, 기록)을 수립하여,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제18조 현금 이상 지방 상무주관부분은 요식업종이 식품낭비반대 관련 행위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 검사해야 하고, 상응하는 상 또는 처벌을 한다.

제19조 현금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분은 본 행정구역 내의 요식업종 통계업무를 정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요식경영자는 상무주관부분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관련정보를 정확히 보내야 한다.

제20조 상무주관부분은 고발제도를 건립 및 완비해야 하고, 고발전화를 설립 및 공포해야 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의 본 판법의 행위 위반은 상무주관부분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상무주관부분은 고발을 받은 후, 직책범위에 속하는 것에 경우, 20업무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5업무일 내에 관련부문에 전해주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과정 중, 상무주관부분은 고발인의 관련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제21조 상무, 가격 등 주관부분은 법률법규, 규장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요식업경영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요식경영자가 본 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률 법규 및 규장에 규정이 있는 경우, 상무주관부분은 관련부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상무주관부분이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 중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3배이하의 벌관(罰款, 한국의 과태료와 유사)을 부과할 수 있으나, 최고 3만원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상무, 가격 등 주관부분은 행정처벌 결정 일부터 20업무일 내에, 행정처벌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나, 행정처벌결정서 중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상무, 가격 등 주관부분의 업무인원이 감독관리 중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본 판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요식업 발전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관련 실시 판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본 판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